

1. 개정이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규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장비 등을 규정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 신설(안 제24조의2, 제25조의2 신설 등)

- 1)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여,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을 통해 기존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폐업·양도에 대한 신고 절차도 신설

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점검측정장비 기준 신설(안 제23조 및 별표5 수정)

1)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점검측정장비 목록을 신설
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기준 및 실적 승계(안 제26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신설)

1) 현행 법령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기준 및 실적 승계에 대한 규정을 준용

라. 기타 경미한 용어 수정(안 제22조 등)

1) 법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서식에 있는 “유지관리업자” 용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를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한다.

제23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사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일 때만 해당한다)

제25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토목, 건축 분야별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 및 영 별표 11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확보해

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제28조제1항”은 “제28조의2제1항”으로 본다.

제27조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 등록증의 재발급,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별지 제16호 서식”은 “별지 제16호의2 서식”으로, “별지 제17호 서식”은 “별지 제17호의2 서식”으로 본다.

제28조제1항 중 “유지관리업자의”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를 각각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가”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별지 제23호 서식”은 “별지 제23호의2 서식”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은 “별지 제24호의2 서식”으로 본다.

제31조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실적승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실적 승계에 관해서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기술인력 보유현황(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장비 보유현황”을 “장비 보유현황(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조사대장”을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체”를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로”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경우에는 토목, 건축 중 1개를 선택하여”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기호(□)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진단·점검측정 장비(제23조 관련)

1. 진단측정 장비(안전진단전문기관)

가. 공통

-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mu s$ 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 4) 철근탐사장비
-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 6) 염분측정장비
- 7) 코어채취기
- 8) 도막(도료 도포막)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mm$ 이하일 것)
- 9) 측량기[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 · 각도 · 거리 측정용]
-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 가)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 나)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나. 교량 및 터널분야

- 1) 정적 변형측정장치
- 2) 동적 변형측정장치
- 3)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mm$ 이상일 것)

다. 수리시설분야

- 1) 유독가스탐지기
- 2) 관로누수탐지기
- 3) 금속관탐지기

라. 항만분야

유속계($0.1m/sec \sim 3m/sec$)

마. 건축분야

- 1) 진동측정기

2) 정적 변형측정장치

바. 종합분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2. 점검측정 장비(안전점검전문기관)

가. 공통

-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mu s$ 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비고

진단·점검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안전점검전문기관 []신규 []재발급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위 신청업종 외에 따로 신청한 업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1부 -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사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합니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1부 -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결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시·도)				

기술인력 보유현황(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업체명(등록번호) :

등록 분야	구분	성명	생년 월일	직무분야		전문분야		교육 수료	입 사 연월일	퇴 사 연월일	비고
				분야	등급	분야	등급				
	가급										
	나급										
	다급										
	기타										

작성방법

1. 보유기술자 중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모두 등록해야 하며, 구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의 제2호 가목,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급, 나급 및 다급으로 표시합니다.
2.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분야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등급이 초급인 기술자는 직무분야만 표시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직무분야란에 건축사로만 기재합니다.
3. 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의 등급에 따라 표시합니다.
4. 교육수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료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명과 해당 교육의 교육수료일을 기재합니다.
5. 입사 연월일에는 처음 근무일을 기재하고, 퇴사 연월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4대보험 상실일)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기술인력 보유현황(안전점검전문기관)

점검업체명(등록번호) :

등록 분야	구분	성명	생년 월일	직무분야		전문분야		교육 수료	입 사 연월일	퇴 사 연월일	비고
				분야	등급	분야	등급				
	가급										
	나급										
	다급										
	기타										

작성방법

1. 보유기술자 중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모두 등록해야 하며, 구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의 제2호 가목,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급, 나급 및 다급으로 표시합니다.
2.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분야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등급이 초급인 기술자는 직무분야만 표시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직무분야란에 건축사로만 기재합니다.
3. 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의 등급에 따라 표시합니다.
4. 교육수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료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명과 해당 교육의 교육수료일을 기재합니다.
5. 입사 연월일에는 처음 근무일을 기재하고, 퇴사 연월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4대보험 상실일)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장비 보유현황(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업체명(등록번호) :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점검분야를 기재합니다.
2. 비고란에는 자기소유 또는 임차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등록번호 제 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등록 분야
5. 등록 연월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
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분야	등록 제 호	등록일자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소재지					
관련면허업종	제 호	겸업사항			
자본금					
납입자본금	변경연월일		실질자본금		
기재사항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210mm×297mm[백상지(80g/m²)]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분야			등록번호 및 등록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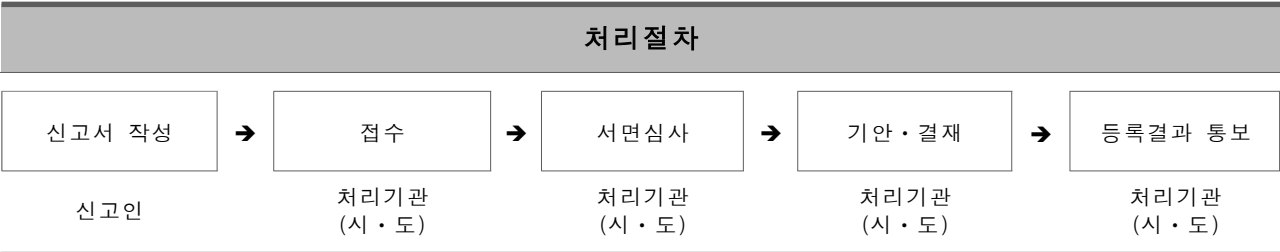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	① 상호란, ② 대표자란, ③ 사무소 소재지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1. 일반현황

① 업체명		대 표 자		② 등록분야	
③ 용역명		과업기간			
관리주체명		대 표 자		전화	
구분		공공·민간			
④ 준공금액 (설계금액)		천원	⑤ 공동수급 (비율, 방식)		⑥ 계약방법

2. 참여업체 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등록분야	도급비율(%)	도급액
대표					(천원)
공동(1)					(천원)
공동(2)					(천원)

3. 시설물의 현황

⑦ 시설물명	⑧ 시설물구분	⑨ 종류	⑩ 종별	⑪ 준공일	⑫ 종전 안전등급
	⑬ 시설물의 위치		⑭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		

4. 점검·진단 실적

⑮ 점검등의 종류		⑯ 수행분야	
⑰ 점검·진단 준공금액 (점검·진단 설계금액)		(천원) (천원)	⑱ 안전등급
⑲ 중대한 결함 등			
주요 점검진단 결과			
주요 보수·보강(안)			
⑳ 내진성능평가	대상여부	대가반영여부	이전 평가여부
			보강 권고여부
	주요 평가결과		

5. 성능평가 실적

㉑ 성능평가 준공금액 (성능평가 설계금액)		(천원) (천원)	㉒ 수행분야
구 분	종합 성능	안전 성능	내구 성능
등 급			사용 성능
주요평가 결 과			

※ 점검·진단 또는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작성 첨부

6.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㉒구분	성명	생년월일	㉓ 과업참여기간	㉔ 직무 분야등급	㉕ 직무 (참 여)분야	㉖소속
책임			. . . ~ . .			
참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6. 기술심의(자문)

㉗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	
첨부자료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①의 "업체명"란에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자체수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②의 "등록분야"란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도로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종합 중 1개를 선택하여 작성하고,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경우에는 토목, 건축 중 1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③의 "용역명"란에는 용역(계약)명을 적습니다.
- ④의 "준공금액"란에는 용역준공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고, "설계금액"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
- ⑤의 "공동수급"란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적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으로 적고 ⑦의 "시설물명"란에 분담시설물에 대하여만 적습니다.
- ⑥의 "계약방법"란에는 일반경쟁·제한경쟁·수의 또는 기타로 구분 적습니다.
- ⑦의 "시설물명"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 관리대장상의 시설물명과 일치하도록 적고, 시설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고유명칭을 적습니다.
- ⑧의 "시설물구분"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하천·상하수도·옹벽·절토사면·공동구
- ⑨의 "종류"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도로교량·도로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고속철도교량·고속철도터널·도시철도교량·도시철도고가교·도시철도터널·일반철도교량·일반철도터널·보도육교·갑문시설·계류시설·방파제·파제제·호안·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댐·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전용댐·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공동주택외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철도역시설·도시철도역시설·일반철도역사·광역철도역시설·공항청사·항만여객터미널·관람장·위락시설·공공업무시설·지하도상가·하구둑·방조제·수문 및 통문·제방 및 부속시설·다기능보·배수펌프장·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옹벽·절토사면·공동구·기타
- ⑩의 "종별"란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이 제1종시설물인 경우에는 "1"로, 제2종시설물인 경우에는 "2"로, 같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제3종시설물인 경우에는 "3"으로, 그 외 시설물인 경우 "기타"로 적습니다.
- ⑪의 "준공일"란에는 시설물의 준공(사용승인)연월일(0000-00-00)을 적습니다.
- ⑫의 "중전 안전등급"란에는 해당용역 전에 실시한 점검등에 의한 안전등급을 적습니다.
- ⑬의 "시설물의 위치"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 ⑭의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란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구 분	형 식	규 모
교 량	()	연장()m, 최대경간장()m, 차로수()
복 개 구 조 물	()	연장()m, 가로()m, 세로()m,
터 널	()	연장()m, 차로수()
지 하 차 도	()	연장()m, 차로수()
갑 문 시 설	()	최대통과선박톤수()톤
방 파 제 · 파 제 제 · 호 안	()	연장()m, 높이()m
계 류 시 설	()	최대계류선박규모()톤
댐	()	저수용량()천만 ^m
건 축 물	()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m
지 하 도 상 가	()	지하()층, 연면적() ^m
하 구 둑	()	연장()m, 높이()m
수 문 및 통 문	()	가로()m, 세로()m, 문짝수()
제 방	()	연장()m, 높이()m
다 기 능 보	()	연장()m, 높이()m
배 수 펌 프 장	()	총 펌프용량() ^m /분
상 수 도	()	공급능력()만 ^m /일
공 공 하 수 처 리 시 설	()	최대처리용량() ^m /일
옹 벽	()	최대높이()m, 연장()m
절 토 사 면	()	최대연직높이()m, 단일수평연장()m
공 동 구	()	연장()m, 런수()런, 폭()m

15. ⑮의 "점검등의 종류"란에는 정기안전점검인 경우에는 "정기", 긴급안전점검인 경우에는 "긴급", 정밀안전점검인 경우에는 "정밀", 정밀안전진단인 경우에는 "진단", 그 외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16. ⑯의 "수행분야"란에는 1)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분야 중 해당 시설물을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한 분야를 적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를 고려하여 수행분야와 일치하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옹벽 및 절토사면의 경우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17. ⑰의 "점검·진단 준공금액"란에는 해당 시설물별 점검·진단 용역의 준공 총금액을 천원단위로 적고, "점검·진단 설계금액"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
18. ⑱의 "안전등급"란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A, B, C, D, E)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9. ⑲의 "중대한 결함 등"란에는 중대한 결함 등의 종류, 해당 부재 등(위치) 및 해당부재의 보수·보강 (안)을 적습니다.
20. ⑳의 "내진성능평가"란에는 내진성능평가 부위 또는 부재, 평가결과(내진성능 확보·부족), 내진성능 부족 부재 및 확보 방안 등을 적습니다.
21. ㉑의 "성능평가 준공금액"란에는 시설물별 성능평가 용역 준공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고, "성능평가 설계금액"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
22. ㉒의 "구분"란에는 기술자의 참여형태를 구분하여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3. ㉓의 "과업참여기간"은 기술자가 참여한 기간으로 과업 배치일과 해제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24. ㉔의 "직무분야등급"란에는 용역에 참여할 당시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적습니다.
25. ㉕의 "직무(참여)분야"란에는 별표 6의 직무분야를 적고, ()안의 실제 참여한 분야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중 1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위 내용은 참여경력 산정에 활용됩니다.
ex) 토목(교량 및 터널), 토목(수리시설), 안전관리(건축), 안전관리(수리시설), ……
26. ㉖의 "소속"란에는 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의 명을 적습니다.
27. ㉗의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실시된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를 적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8. 관리주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소속된 기술자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위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체구분	☐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점검전문기관				
사용용도	☐ 적격심사 ☐ PQ ☐ 기타			제출처	
실적확인 내용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 . ~ . . .		부수	부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 귀하					
				수수료	
				법 제6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수료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체구분		[]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점검전문기관			
사용용도		[] 적격심사		[] PQ		[] 기타		제출처	
용역명		관리주체		용역기간		설계금액 또는 예가		준공금액	
								출자비율 (분담내용)	
연번	시설물명	관리번호	종별 및 종류		형식 및 규모		용역 구분	수행금액	
			종별	종류	형식	규모			
1									
2									
3									
책임(참여) 기술자	성명	생년월일	참여구분	직무분야	과업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 현황	처분구분	처분일자	분야	처분내용	처분사유				
부실판정 현황	판정구분	판정일자	분야	대상시설	판정사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토안전관리원장

직인

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 리 기 10일 간
양도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종별	등록번호	
양수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종별	등록번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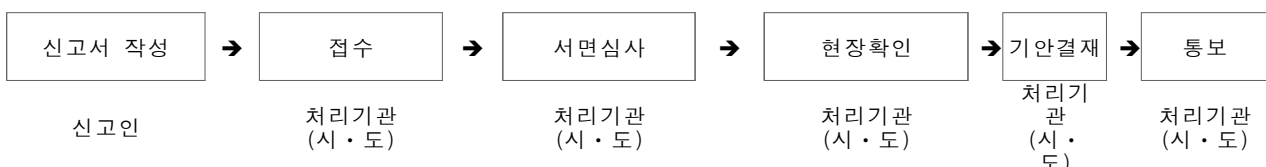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에 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3.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구 분	형 식	규 모
교 량	()	연장()m, 최대경간장()m, 차로수()
복 개 구 조 물	()	연장()m, 가로()m, 세로()m,
터 널	()	연장()m, 차로수()
지 하 차 도	()	연장()m, 차로수()
갑 문 시 설	()	최대통과선박톤수()톤
방 파 제 · 파 제 제 · 호 안	()	연장()m, 높이()m
계 류 시 설	()	최대계류선박규모()톤
댐	()	저수용량()천만m ³
건 축 물	()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m ²
지 하 도 상 가	()	지하()층, 연면적()m ²
하 구 독	()	연장()m, 높이()m
수 문 및 통 문	()	가로()m, 세로()m, 문짝수()
제 방	()	연장()m, 높이()m
다 기 능 보	()	연장()m, 높이()m
배 수 펌 프 장	()	총 펌프용량()m ³ /분
상 수 도	()	공급능력()만m ³ /일
공 공 하 수 처 리 시 설	()	최대처리용량()m ³ /일
옹 벽	()	최대높이()m, 연장()m
절 토 사 면	()	최대연직높이()m, 단일수평연장()m
공 동 구	()	연장()m, 련수()련, 폭()m

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합병전 법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종별	등록번호		
합병전 법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종별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종별	등록번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공고문 1부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하려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하도급의 통보) ----- ----- ----- ----- 법 제28조 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 ----- ----- ----- -----.
제23조(진단측정 장비) 영 제23조 및 영 별표 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제23조(진단측정 장비) ----- -----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 관----- -----.
<신 설>	제24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 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 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 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 다)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

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신 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일 때만 해당한다)

제25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토목, 건축 분야별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

	<u>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u> <u>④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u>
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생략)	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u>② 영 제23조제1항 및 영 별표 11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제28조제1항”은 “제28조의2제1항”으로 본다.</u>
제2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제27조(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

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① ~ ③ (생략)

<신 설>

제28조(보고·조사) 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서류 등을 조사를 한 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조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

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 등록증의 재발급,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별지 제16호 서식”은 “별지 제16호의2 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 서식”으로 본다.

제28조(보고·조사) ① -----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

----- 안전진단전문기관
----- · 안전점검전문기관 -----

-----.

② -----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

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현황과 안전점검등 성능평가의 대행실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안전점검
전문기관-----

-----.

③ ----- 안전
점검전문기관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안전점검전문기관-----

<신 설>

④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실적 승
계에 관해서는 제1항에서 제3항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
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 본다.